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792 호

2008년 1월 25일 금요일

차 례

규 칙

○규칙 제2007-70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

공 고

○공고 제2007-89호(2008년 제1차 압류 차량 공매 공고) 11
 ○공고 제2007-95호(2008『남동구여성합창단』단원 모집 공고) 15
 ○공고 제2007-96호(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공고) 16
 ○공고 제2008-98호(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고) 17
 ○공고 제2008-100호(공인등록 공고) 20
 ○공고 제2008-111호(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결과) 및 감정평가 참여 거부 시 조치계획 공고) 21
 ○공고 제2008-111호(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2-10호선외 2개노선) 실시계획
 인가(비관리청)를 위한 재공고·열람) 23

고 시

○고시 제2008-4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도림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29
 ○고시 제2008-5호(인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31
 ○고시 제2008-6호(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도림동 소3-2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39
 ○고시 제2008-7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한화꿈에그린월드 에코메트로 9블럭) 43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규	칙
---	---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8년 1월 25일

남동구 규칙 제70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중 “제63조”를 “제68조”로 한다.

제 2 조제1호 중 “그날 20:00부터 다음날 06:00사이에 본인의 출입문 앞에”를 “지정된 요일 19:00부터 24:00사이에 내 집 주 출입구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로 하고, 동조제2호 중 “09:00이전에 본인의 출입문 앞에”를 “19:00부터 24:00사이에 내 집 주 출입구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로 한다.

제10조 중 “제63조”를 “제68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의 부과 기준 (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2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단위 : 만원)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법 제13조)			
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배출된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혼합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2) 적정처리·보관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하는 경우	500	700	1,000
(3) 운반차량을 도색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500
(4) 폐기물수집·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 운반차량으로 운반 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700
(5)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아니하는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에 한한다)	300	500	700
(6) 폐기물을 흘날리거나 누출 또는 침출수를 유출시키는 경우	300	500	700
(7) 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8) 기타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500	700	1,000
(9)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고 운반하는 경우	200	300	500
(10) 기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300	500	700
(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400	600	1,000
나.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보관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가) 1일 이상 1월 미만 경과 시	200	400	600
(나) 1월 이상 3월 미만 경과 시	400	600	800
(다) 3월 이상 경과 시	1,000	1,000	1,000
(2)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100	200	300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3)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100	200	300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4)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100	200	300
(5)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시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	200	300
(6) 기타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300	500	700
(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400	600	1,000
다.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매립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500	700	1,000
(2) 소각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400	600	800
(3) 재활용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기물 재활용신고 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 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	600	800
(나)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2)나)	500	700	1,000
(4)의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기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1의2. 폐기물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법 제25조제8항)	500	700	1,000
2.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법 제38조제1항(제3호 제외))	100	100	100
3.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법 제38조제1항제3호)			
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700
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00	700	1,000
3의2.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에게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법 제38조제3항)	100	100	10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제8항)			
가. 폐기물 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나. 위탁계약서의 작성·체결 및 보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	1,000	1,000
(2) 운반단가(운반비)·처리단가(처리비) 또는 운반·처리장소의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500	700	1,000
(3) 운반단가(운반비) 및 처리단가(처리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 하는 경우(배출자,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 체결하거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외에 처리까지 계약 체결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500	700	1,000
(4) (2)의 내용외의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300	500	700
(5) 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그 처리비를 기일 내에 사후정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 위탁하는 경우(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을 재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700	1,000	1,000
마.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보관범위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1) 보관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 3일 미만 초과 시	300	500	700
(나) 3일 이상 초과 시	500	700	1,000
(2) 보관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 150톤(100㎡) 미만 초과 시	300	500	700
(나) 150톤(100㎡) 이상 초과 시	500	700	1,000
(3) 보관 장소가 동일 시·도에 2개소 이상인 경우	1,000	1,000	1,000
바. 수집·운반 및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을 받는 경우			
(1) 50퍼센트 미만 초과 시	300	500	700
(2) 50퍼센트 이상 초과 시	500	700	1,000
사. 인수받은 폐기물을 30일(감염성폐기물은 7일) 이내 처리 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아.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00	500	1,000
5.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지 관리 하였거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 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가.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1)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아니 하는 경우	200	500	1,000
(2)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아니 하는 경우	200	500	1,000
(3) 바닥재가 감열감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	500	600
(4)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300	500	1,000
나. 가목 외의 중간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300	500	1,000
다.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700	1,000	1,000
(2) 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복토하는 경우	400	600	1,000
(3) 기타 관리 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500	700	1,000
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소각시설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	1,000	1,000
(2) 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1,000
마.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1,000	1,000	1,000
6.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한 자 (법 제34조제1항)	300	500	1,000
7. 방치되는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			
가.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 (법 제40조제3항제1호)	1,000	1,000	1,000
나.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금의 증액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법 제40조제7항)	300	300	300
다.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 갱신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의 추가예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0조제8항)	1,000	1,000	1,000
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한 자가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9항)	100	100	100
마.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조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10항)	100	100	100
7의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 한 자(법 제17조제1항 제3호)	100	200	300
7의3.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 하지 아니한 자(법 제17조제3항)	100	200	300
7의4. 폐기물처리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 한자(법 제18조제2항)	100	200	30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7의5.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 인계서에 갈음하는 전산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기한 내에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법 제45조제2항)	10	20	50
8.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 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법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 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			
가.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300
나.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50	100	100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법 제17조제2항·제25조제10항·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2항)	100	200	300
10.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 보이지 아니한 지정폐기물 운반자(법 제19조제3항)	300	300	300
11. 위탁받은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배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처리한 자(법 제19조제4항)	100	200	300
12.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법 제36조제2항)	300	300	300
13. 휴업·폐업 또는 재 개업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 자(법 제37조)			
가.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300	300	300
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	100	200	300
14. 폐기물의 수집 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3	3	3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	15	2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15	20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 일반 폐기물 50kg 이하	20	30	50
(2) 일반 폐기물 51kg 이상	50	50	50
(3) 폐 목재 및 가구류	30	40	50
(4) 농산물 도매시장 내 무단투기 20kg 미만	30	40	50
(5) 농산물 도매시장 내 무단투기 20kg 이상	50	50	5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 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			
(1) 무단투기 한 폐기물을 즉시 처리 하는 경우	50	70	100
(2) 무단투기 한 폐기물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100	100	100
바.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10	20	50
15.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법 제8조제3항)	30	70	10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16. 조례가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조례 제4조·제6조)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배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17. 감시전문기관에 감시 위탁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법 제22조 제1항)	100	100	100
18.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29조제4항)	100	100	100
19.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경우	30	40	50
나. “가”이외의 교육대상자	30	40	50
20. 폐기물 관리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36조제1항)	100	100	100
21.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39조제1항)	50	100	100
22.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39조제1항)	100	100	100
23.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50조 제1항)	100	100	100
24. 생활 및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조례에서 정한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 및 배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조례 제4조)			
가. 조례 제4조의 제1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5	7
나. 조례 제4조의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20	5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규정에 의해 일정한 범위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위반 시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쓰레기 배출시간 조정 (제2조)
-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1 24항 신설 (제10조)

공	고
---	---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8-89호

2008년 제1차 압류 차량 공매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견인 되어 반환 통지 등 조치 후 1개월 이상 보관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
법 제3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매각)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8. 1. 2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주차관리과) 및 각동 주민자치센터
2. 열람기간 : 공보 게재일로부터 15일 이상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2008년 제1차 압류 차량 공매 공고 내용

가. 공매대상재산(차량)의 표시

연번	공매 차수	소 유 자	차량명	공매물건	매 각 예정가격	이 해 관계인
1	1차	이동만	뉴그랜저	인천33더7420	50,000	등록원부 참 조
2	1차	윤미경	프레지오	인천70가2164	70,000	"
3	1차	이경화	겔로퍼	인천1그6288	50,000	"
4	1차	신효식	쏘나타	인천31머8988	70,000	"
5	1차	이경호	포터	인천80머3191	70,000	"
6	1차	장세복	라노스	05보3757	70,000	"
7	1차	이귀안	그레이스	인천70라5092	70,000	"
8	1차	한상겸	포터	인천7머2231	50,000	"
9	1차	최영수	그랜저	경기40다6853	50,000	"
10	1차	육일엔터테인먼트	포터	인천80머8277	70,000	"
11	1차	강영식	라노스	인천35러1796	70,000	"
12	1차	오중훈	타우너	강원80라6686	100,000	"
13	1차	허태경	티코	경기67거7708	70,000	"
14	1차	엄현주	아반테	인천30고4724	70,000	"
15	1차	김정배	세피아	인천35노1343	70,000	"

나. 입찰신청 및 보증금 입금마감기간 : 2008. 1. 22. ~ 2008. 2. 1. 24:00 (11일간)

※ 유의사항

- 입찰등록기간 내에 입찰서 작성 및 입찰보증금 납부
- 유찰시 2회차 이후 입찰일정은 개찰이후 별도공고(다음 차 입찰공고와 동시 가능)

다. 입찰참여 마감일시 : 2008년 2월 1일 (금) 24시

라. 개찰결과 매각결정 일시 : 2008년 2월 4일 (월) 14시

(주)오토마트 홈페이지(<http://www.automart.co.kr>) 발표

※ 입찰참여 마감 후 입찰보증금 입금여부 확인

마. 공매방법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하여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에게 낙찰하며,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의 선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

바. 입찰참가 및 등록 방법

1.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http://www.automart.co.kr>) 입찰등록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
2. 선택차량에 대한 입찰권한은 다음 계좌에 입찰보증금을 입찰가격의 10/100 이상을 입금해야 부여되며, 기한 내 입찰보증금 미납시 또는 타인명의 입금시 입찰 참가자격을 취소함.

입금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23-701727 남동구청(본인명의로만 입금)

※ 주의 : 입찰신청 후 약 15분정도 지난 후에 입금은행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은행 업무시간외(휴일 및 오후10시부터 오전9시까지)에는 입금할 수 없습니다.

입찰신청 후 [입찰참여] 에서 입찰가를 반드시 등록해야만 입찰이 완료됩니다.

사.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2008. 2. 11)

※ 대금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1회의 최고 절차를 거쳐 우리 구에 귀속되며, 해당차량은 재 공매 조치합니다.

아. 매각예정가격 :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된 이번 회차 공매최저가격임

자. 매각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잔금납부일부터 15일 이내 소유권 이전등록 후 차량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사항

- ※ 공매물건의 하자 및 표시착오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본인 책임하에 현지 확인 등을 통해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낙찰된 물건에 대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용을 은행 등에 완납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 ※ 매각 진행 중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비용 모두를 납부하고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차량에 대하여 공매를 취소합니다.
- ※ 낙찰 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는 건당 7,500원이며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 낙찰 받은 차량에 대하여 정기검사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한 차량의 경우에는 이전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매각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각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자 책임하에 이전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 ※ 기타 사항은 남동구청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 차량공매담당(☎032-453-289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	---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8-95호

2008 『남동구여성합창단』 단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에서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합창문화 창달을 선도해 나갈 재능 있는 『남동구여성합창단』 단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합창단원 모집

- 기 간 : 2008. 1. 28 ~ (수시모집)
- 접 수 처 : 남동구청 문화홍보실(☎453-2130)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namdong.go.kr>)
- 자 격 : 성악에 재능 있는 만 20세이상 ~ 45세 미만의
남동구 거주 여성
-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및 사진(3.5cm × 4.5cm) 1매
- 모집인원 : 10명 내외
- 선발방법 : 공개오디션
 - ※ 악보(자유곡) 2부 지참. 【단, 가요는 제외】
 - 일시 및 장소 : 매주 수, 금요일 14:00 남동구청 7층 소강당
여성합창단 정기연습시(일시 별도통지)
 - 결 과 : 개별통보
- 의무 및 대우
 - 무보수 명예직임.
 - 합창분야의 남동구홍보사절단으로 활동
 - 각종 합창제 및 공연행사 참여로 남동구청 선양

2008년 1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	---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8-96호

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2008. 2. 11일까지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폐차 말소등록 처리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8. 1. 23 ~ 2008. 2. 11

2. 대상 자동차

신청대상차량			이해관계내용	이해관계인	송 달 지
자 동 차 등록번호	성명	사용본거지			
인천33나 6768	(주)대일 엔지니어링	남동구 운연동 408	인천지방법원 (사건98카합3650)	나산콘트롤 (주)	인천시 서구 가좌동 178-78 현광아파트공장 A/602
인천5더 1555	이규동	부평구 부평동 285-10 3/3	인천지방법원 (사건95타경43053)	전상록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06 신도연립 A/109
인천33도 8530	김미희	남동구 간석동 900-153 현대홈타운 107/602 26/4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사건2004카단13143)	(주)대운상호 저축은행	전남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908 순천지점
인천30고 1362	이옥분	연수구 동춘동 932 한양2차@25/205 27/3	인천지방법원 (사건2000카단6836)	이옥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519-4 한진@ 2/1005
인천7로 4757	하명규	남구 송의동 233-3 21/2	인천지방법원 (사건97카단1078)	류춘간	인천시 동구 송림동 68-31 대동상사

3.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과 차량등록팀(☎453-2941)

2008. 1.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8-9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만수동과 장수동 등 2개의 법정동으로 분할된 한 개의 구역(32개 필지, 45,279㎡)을 만수동으로 일원화시킴으로서 주민의 행정구역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장수동 700-1번지 주변 일부지역(32개 필지, 45,279㎡)을 만수동으로 변경함. (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8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전화 032-453-2234)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붙임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만수동과 장수동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구 별	명 칭	변 경 후
		관 할 구 역
남동구	만수동	만수동 일원(장수동에서 편입된 68, 681-1, 3, 682-1, 2, 4-8, 11, 12, 684의 4, 8, 9, 685의 5-7, 761의 1 포함, 구월동에서 편입된 628-4, 13, 629의 2, 1068의 2 포함, 수산동에서 편입된 1의 1, 3, 8, 9, 11, 14, 19, 20, 22, 23, 24, 25, 26, 27, 2의 2, 3, 5, 6, 7, 21, 45, 47, 48, 49, 51, 52, 53, 54, 55, 56, 57, 58, 59, 695의 5, 6, 7, 8, 16, 29 포함, 간석동에서 편입된 225-23, 225-88, 22-254, 225-255, 225-256, 225-279, 산37-20, 산38-5 포함, 서창동으로 편입된 708-3, 709-3, 4, 710-1, 2, 3, 5, 6, 7, 8, 10, 711-1, 4, 712, 713, 714-1, 2, 715-1, 2, 716-1, 2, 717, 717의 1-9, 718의 1-4, 719, 719의 1-5,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1, 2, 730, 730-1, 731, 732, 733-1, 2, 734, 735, 736, 737-1, 738-1, 739-2, 815, 816-1, 3, 817-1, 818-1, 산87-1, 산88-1, 산89의 3-6, 산91의 3-4, 산99의 1-2, 산100-5, 산111의 3-4 제외 장수동에서 편입된 685-1, 686, 688-2, 688-4, 687, 688-9, 689-4, 689-6, 689-13, 690-3, 698-3, 698-11, 699-1, 699-6, 700-1, 700-4, 700-5,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10, 710-3, 712, 713, 714, 761, 762 포함)
	장수동	장수동 일원(만수동으로 편입된 681, 681의 1, 3, 682의 1, 2, 4-8, 11, 12, 684, 4, 8, 9, 685의 5-7, 761의 1 제외, 만수동으로 편입된 685-1, 686, 688-2, 688-4, 687, 688-9, 689-4, 689-6, 689-13, 690-3, 698-3, 698-11, 699-1, 699-6, 700-1, 700-4, 700-5,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10, 710-3, 712, 713, 714, 761, 762 제외)

공	고
---	---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8-10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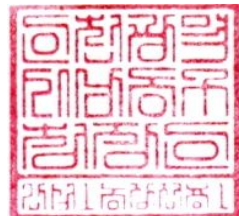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2008. 1. 25

- 신조 사유 : 민원전용 인증기 추가 설치
- 최초 사용년월일 : 2008. 1. 28
- 신조 공인명 및 인영

신 조 공 인 명	인 영
간석1동장인(간석1동민원전용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간석1동장전용1)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8-111호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결과) 및 감정평가 참여 거부 시 조치계획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결과) 및 감정평가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조치계획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2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13개 우수감정평가법인 중에서 선정

2.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 가정평가기관 선정일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공개추첨을 통해 감정평가 참여 순위를 결정, 균등한 기회 부여

3. 감정평가 참여 거부 시 조치계획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감정평가기관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감정평가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당기간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추후 감정평가 참여 기회를 2회에 한하여 지정 제외한다.

4. 감정평가기관 선정(순위) 결과

순위	법 인 명	대표자	주 소
1	(주)제일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김상현	남동구 구월동 277 인항빌딩 8층 801호
2	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주) 경인지사	김일환	계양구 계산동 1062 하이베라스 c동 908호
3	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장세영	남동구 구월3동 1092-55 건설회관 2층
4	(주)하나글로벌감정평가법인 서해지사	박범수	남동구 간석동 905-2
5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서부지사	안창모	부평구 삼산동 462-4 유림빌딩 8층
6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한원혁	남구 주안6동 1586-14 할렐루야빌딩 10층
7	(주)삼창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박정수	남동구 간석동 520 탑프라자 604호
8	(주)경일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정택진	남동구 간석동 320-1 신진빌딩 301호
9	(주)가온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정지순	남동구 구월1동 1139-8 우남빌딩 1층,3층
10	(주)대한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박이출	남동구 구월동 1140-5 대흥빌딩 201호
11	중앙코리아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이원복	부평구 부평동 397-4 부평로알프라자 9층
12	(주)나라감정평가법인 경인지역본부	김민수	부평구 부평동 529-40 동아웰빙타운 4층 401호
13	(주)대화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박재수	부평구 산곡동 194-6 산곡프라자 501호

공	고
---	---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8-115 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2-10호선외 2개노선) 실시계획인가(비관리청)를 위한 재공고·열람

인천도시계획시설 【사업명 : 인천향촌주변도로(소2-10호선외 2개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비관리청)를 위한 재공고·열람을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개발과(☎032-453-2963),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도시정비2팀(☎032-450-821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당해 도로개설 시행지구안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내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01.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재공고, 열람 사유 :

중3-2호선 도면 및 용지조서 변경

2. 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향촌 주거환경개선지역 주변도로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로(소2-10호선, 소2-1호선, 중3-2호선)

【명 칭】 인천향촌주변도로(소2-10호선외 2개노선)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규모 :

- 소 2-10호선 : B=9.0~12.5m, L=833m
- 소 2- 1호선 : B=8.0m, L=115m
- 중 3- 2호선 : (B=12.0m, L=84m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성 명】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07-8번지

6.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

- 실시계획인가일 ~ 2010. 12.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첨」****9. 열람기간 : 열람일로부터 20일간****10. 첨부 : 관계도서(게재 생략)**

용 지 조 서 (전 체)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 적 (M2)			공 유 지 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동	지 번		공부	편입	잔여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1	만수	71-143	도	83	75	8		인천광역시				
2		71-153	도	94	87	7		인천남동구				
3		71-5	대	81	36	45		인천남동구				
4		71-130	전	113	10	103	418.8 / 668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62.3 / 167	인천남동구				
5		71-122	전	94	89	5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6		71-123	전	64	19	45		인천남동구				
7		71-121	전	143	10	133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8		71-120	대	94	3	91	91/94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3/94	인천남동구				
9		71-176	전	231	163	68	491.023 / 650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58.977 / 650	인천남동구				
10		71-118	전	419	419	-		인천광역시				
11		71-113	전	130	21	109	410/520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27.5/130	인천남동구				
2		5-166	전	80	7	73	73/80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7/80	인천남동구				
13		5-499	도	203	50	153		인천남동구				
소 계				1,829	989	84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M2)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공부	편입	잔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4	만수	5-61	도	3,632	878	2,754		인천 남동구				
15		5-165	대	122	34	88		대한주택 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6		5-163	대	171	8	163		대한주택 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7		5-162	대	118	41	77		대한주택 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8		5-161	대	153	24	129		대한주택 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9		5-160	대	147	24	123		대한주택 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20		5-159	대	146	25	121		대한주택 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21		5-158	대	146	24	122		대한주택 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22		5-157	대	142	23	119		대한주택 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23		5-156	대	142	24	118		대한주택 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24		5-155	대	153	20	133		대한주택 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25		5-498	도	100	26	74		인천 남동구				
26		5-290	도	228	228	-		인천 남동구				
27		5-15	대	112	9	103		대한주택 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28		5-437	대	19	16	3		대한주택 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29		71-131	대	465	94	371		대한주택 공사				
30		71-170	도	307	307	-		국 (산림청)				
31		5-293	도	409	404	5		인천 남동구				
소 계				6,712	2,209	4,503						
32	만수	산1-15	임	178	178	-		박승택	서울 강북구 미아동 791-2206			
33		산1-23	임	60	60	-		대한주택 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34		산1-14	임	4,383	354	4,029		대한주택 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35		5-500	도	2	2	-		인천 남동구				
36		5-438	대	10	10	-		학교법인 송덕학원	인천 남동구 만수동 5-213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 적 (M2)			공 유 지 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동	지 번		공부	편입	잔여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37		산1-13	임	445	384	61		박승택	서울 강북구 미아동 791-2206			
38		5-414	대	79	79	-		주식회사 원광	인천 남동구 만수동 산1-2	(주)화인 캐피탈	서울 중구 장교동1 1003,1004호	가압 류
39		5-412	잡	274	274	-		주식회사 원광	인천 남동구 만수동 산1-2	(주)화인 캐피탈	서울 중구 장교동1 1003,1004호	가압 류
40		5-413	대	397	40	357		대한주택 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41		5-501	잡	33	10	23		대한주택 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42		산1-22	임	127	26	101		대한주택 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43		산1-8	임	50	6	44		홍사목	인천 남동구 구월동 258 팬더아파트 8동 801호			
44		80-882	잡	34	6	28	350 /2752	대한주택 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2402 /2752	인천 남동구				
45		80-340	잡	1,524	95	1,429	523.34 /2752	대한주택 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2228.66 /2752	인천 남동구				
46		80-881	잡	223	15	208	350 /2752	대한주택 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2402 /2752	인천 남동구				
소 계				7,819	1,539	6,280						
47		80-652	잡	1,269	1,203	66	402 /2752	인천 광역시				
							2350 /2752	주식회사 양돈가공 센터	인천 남동구 만수동 산1-2			
48		80-339	잡	1,553	66	1,487	350 /2752	대한주택 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2402 /2752	인천 남동구				
49		80-653	잡	51	2	49	350 /2752	대한주택 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2402 /2752	인천 남동구				
50	만수	80-880	잡	187	35	152	350 /2752	대한주택 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2402 /2752	인천 남동구				
51		80-654	잡	123	43	80	350 /2752	대한주택 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2402 /2752	인천 남동구				
52		80-784	잡	15	15	-	402 /2752	인천 광역시				
							2350 /2752	주식회사 양돈가공 센터	인천 남동구 만수동 산1-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M2)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공부	편입	잔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53		산8-28	임	182	25	157		국 (산림청)				
54		산8-30	임	547	430	117		국 (산림청)				
55		산8-24	임	1,070	325	745		국 (산림청)				
56		산8-23	임	484	12	472		국 (산림청)				
57		산8-27	임	202	202	-		국 (산림청)				
58		산8-29	임	82	59	23		국 (산림청)				
소 계				5,765	2,417	3,348						
59	만수	산8-25	임	175	137	38		국 (산림청)				
60		109-33 5	도	12	12	-		인천 광역시				
61		109-23 3	도	1,036	159	877		인천 광역시				
62		109-32 7	전	660	558	102	1/2	김성진	인천 동구 송현동 87			
							1/2	인천 남동구				
63		산8-20	임	15,584	25	15,559		국 (산림청)				
64		109-32 8	전	281	162	119	1051. 166 /1523	대한주택 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471.8 34 /1523	인천 남동구				
65		산8-26	임	200	160	40		국 (산림청)				
66		109-33 3	도	370	266	104		인천 광역시				
소 계				18,318	1,479	16,839						
합 계	66필지			40,443	8,633	31,810						

고	시
---	---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8-4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 2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명 : 도림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2.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변경 전 : 도림동 도림구획정리사업지구 32블럭 1,2,3,4,5롯데,산35-3

변경 후 : 도림동 도림구획정리사업지구 32블럭 1,4롯데, 산35-3

○ 대지면적 : 16,211.40㎡(변경 없음)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한토지신탁(주)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4-31

4. 사업시행기간 : 2005. 10 ~ 2008. 1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05. 10. 19

6.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역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도림구획정리사업지구 32블럭-1롯트 외 2필지
사 업 규 모	대지면적	16,211.40 m ²
	연 면 적	51,303.68 m ²
	세 대 수	342 세대
	규 모	지하2층 / 지상19층 / 6동
	사 업 비	85,000,000천원

7. 사업계획변경 내용 및 사유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지번 및 지적선 변경 : 도림동 32블럭 1,2,3,4,5롯트, 산35-3 → 도림동 32블럭 1,,4롯트, 산35-3 - 조경면적 증가(6,110.55m² → 6,119.13m²) - 장애인편의시설 일부 조정	- 도림지구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환지계획 변경(면적변경 없음) - 지적선 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 - 장애인편의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조정

고	시
---	---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8-5호

인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개발과(☎032-453-29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 01. 2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결정취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의 결정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 교통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86	7.5	국지 도로	112	대1-12	간석동 616-13	일반 도로	-	-	

■ 교통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지하주차장)	남동구 만수동 922	-	증1,658.4	1,658.4	-	도시계획시설(공원)과 중복결정 ·지하1층 주차장 ·지상1층 공원
신설	②	주차장 (노외주차장)	구월동 1121-2,-14	-	증271.8	271.8	-	
신설	③	주차장 (노외주차장)	구월동 1256-9외9	-	증1,019.3	1,019.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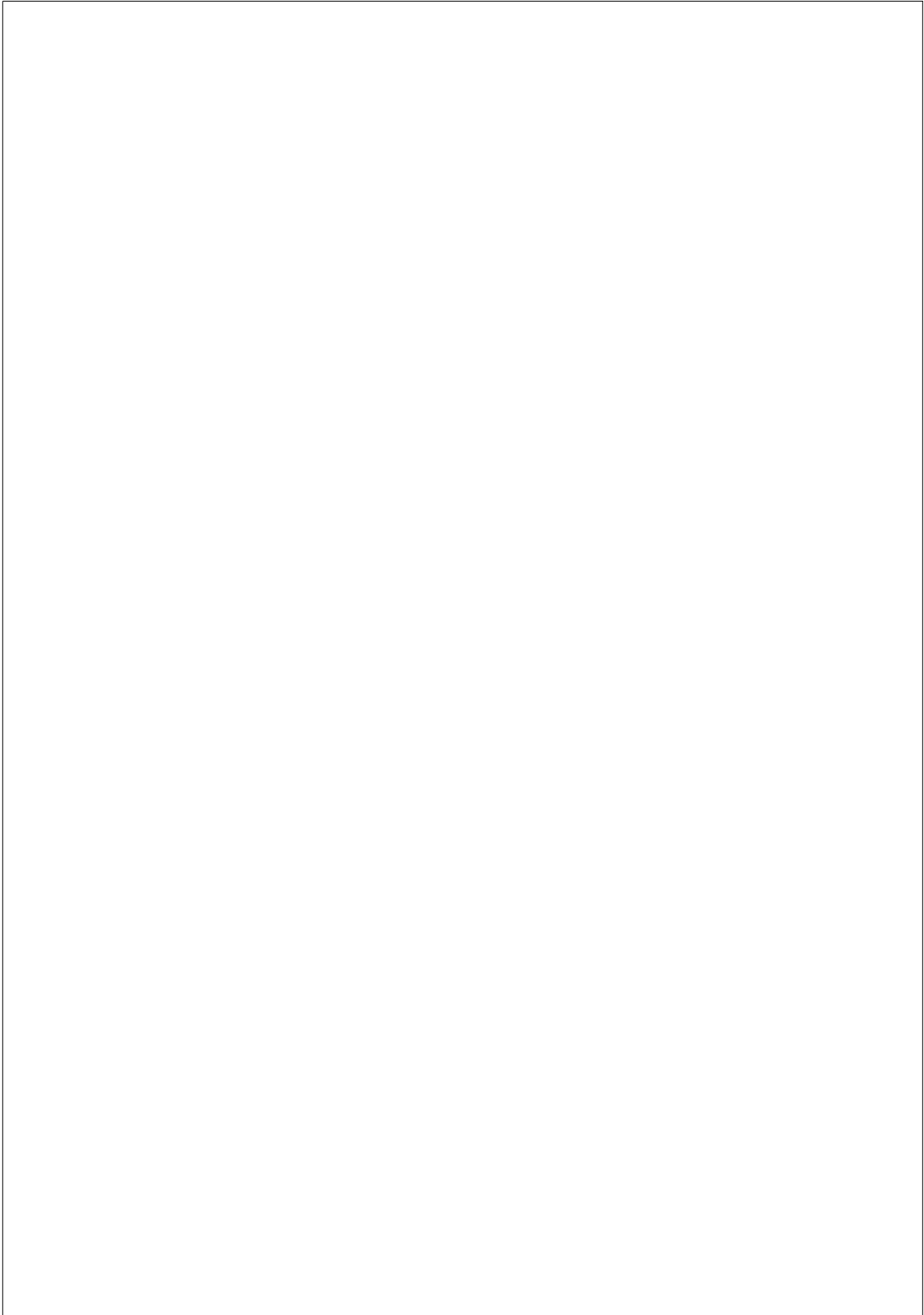
3. 지형(결정)도면 : “별 첨” (게재생략)

용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시,군, 읍,면,동,리)	지 번	일련 번호	지 목	면적 (㎡)	편입면 적(㎡)	소 유 자		관 계 자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도림동	산43-1	1	임	9,186	231	서울동작구사당동 169-8대림아파트6-706	이규복		
2	도림동	264-7	2	전	179	179	264-4	박찬원	서울중구충정로 1가75 (인천중앙지점)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3	도림동	617-7	3	도	468	395	건설교통부	국		
4	도림동	265-7	4	도	7	7	265	천원성		
5	도림동	265-6	5	전	27	27	265	천원성		
6	도림동	267-5	6	전	215	215	265	천원성		
7	도림동	266-30	7	대	10	10	간석동 557-4	이명금		
8	도림동	266-35	8	전	23	23	인천남동구도림동 266-1	황대익		
9	도림동	266-36	9	전	6	6	266-1	문성자		
10	도림동	266-34	10	전	38	38	인천연수구동춘동 924-3삼성아파트5-704	박중배		
11	도림동	266-32	11	전	5	5	북구 심정동 513-9	최순례외 2인		
12	도림동	266-31	12	전	75	75	북구 심정동 513-9	최순례외 2인		
13	도림동	266-33	13	대	6	6	북구 심정동 513-9	최순례외 2인		
14	도림동	271-6	14	전	163	163	북구 심정동 513-9	최순례외 1인		
15	도림동	631-1	15	공 원	184.8	184.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		
16	도림동	263-3	16	전	83	83	서울강남구압구정동 369-1현대아파트 10-1005	조원영		
17	도림동	263-4	17	전	26	26	경기도송탄시이충동 471-23대양열아파트 에이동205호	성용인		
18	도림동	262-1	18	답	26	26	서울강남구압구정동 369-1현대아파트 10-1005	조원영		
19	도림동	267-4	19	답	42	42	인천남동구도림동 266-1	황대익		
20	도림동	268-10	20	전	71	71	서울동작구노량진동 313-116	조성영		
21	도림동	268-11	21	임	51	51	서울동작구노량진동 313-116	조성영		
22	도림동	645	22	도	962.3	8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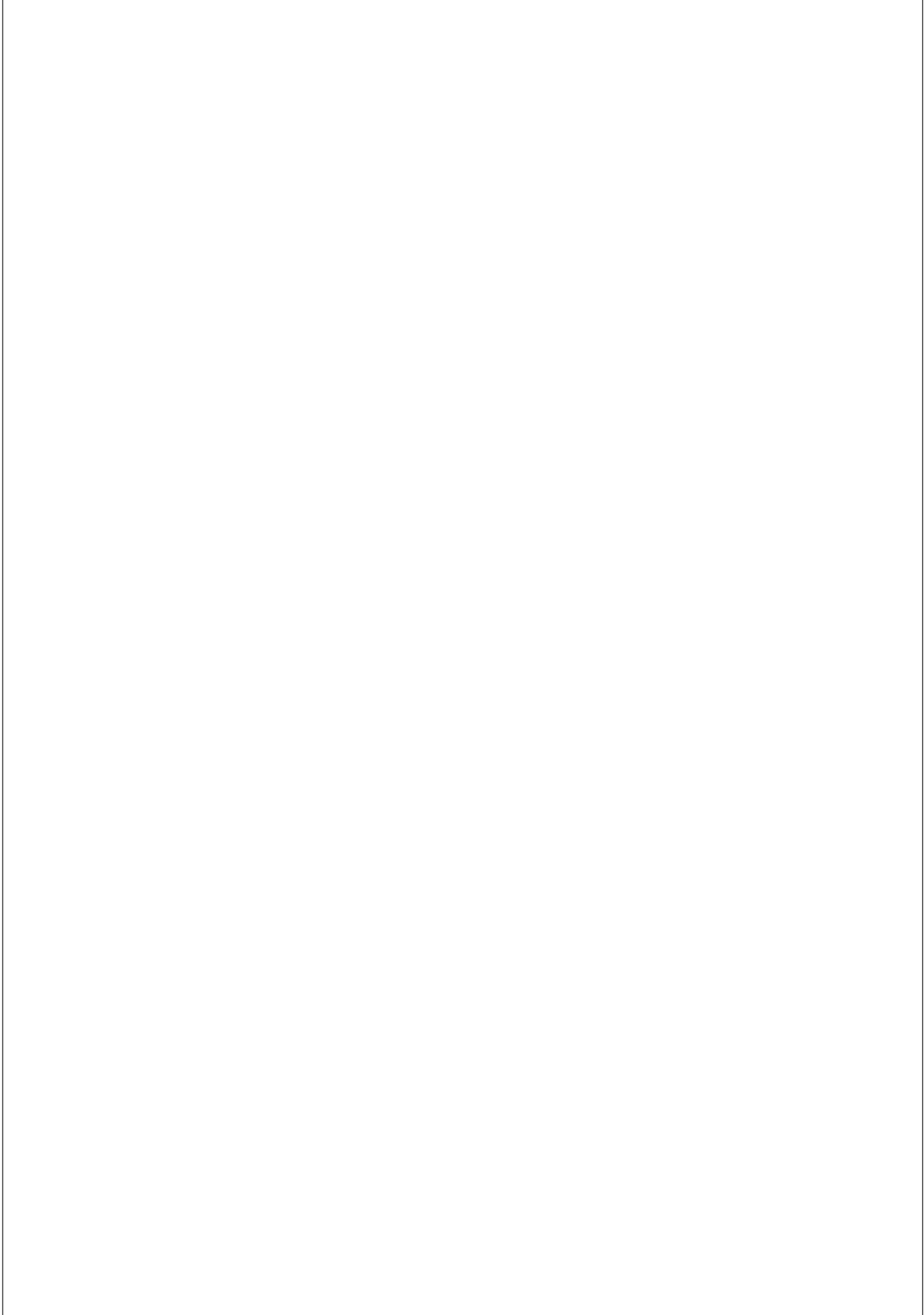












고	시
---	---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8-6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 도림동 소3-2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 【사업명 : 도림3지구내 도로(소3-2호선) 확·포장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하고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설과(☎032-453-2724) 및 도시개발과(☎032-453-29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8. 01. 2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의시행지

- 도림동 소3-2호선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272-2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로(소3-2호선)
- 명 칭 : 도림3지구내 도로(소3-2호선) 확·포장공사

3. 사업의 규모

- 폭원(B)=6m, 연장(L)=25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88(만수6동 1008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2008. 01. ~ 2008.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7.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첨」

8. 첨 부 : 관계도서(게재 생략)

고	시
---	---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8-7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사 업 명

-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한화꿈에그린월드 에코메트로 9블럭

2.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

- 성명 : (주)한화 (대표자 : 남영선) 외2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번지

3. 사업 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9블럭
- 사업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2층, 지상50층, 6개동, 810세대
- 연 면 적 : 223,313.928㎡
- 사 업 비 : 546,356,995천원
- 변경내역
 - 주차장 슬래브, 지하외벽, 매트 및 기둥하부기초 배근 강화
 - 커뮤니티시설 코어 계단실 하부 매트기초 배근 강화
 - 각동 기둥, 기초 및 바닥 배근 강화
 - 근린생활시설 평면변경 및 기초형식(매트⇒파일기초) 변경 등

4. 사업시행기간(예정) : 2007. 7. 2. ~ 2011. 2. 24.

5. 관계도서는 우리 구 건축과(☎453-279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8-7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한화꿈에그린월드 에코메트로 9블럭

2.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

- 성명 : (주)한화 (대표자 : 남영선) 외2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번지

3. 사업 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9블럭
- 사업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2층, 지상50층, 6개동, 810세대
- 연 면 적 : 223,313.928㎡
- 사 업 비 : 546,356,995천원
- 변경내역
 - 주차장 슬래브, 지하외벽, 매트 및 기둥하부기초 배근 강화
 - 커뮤니티시설 코어 계단실 하부 매트기초 배근 강화
 - 각동 기둥, 기초 및 바닥 배근 강화
 - 근린생활시설 평면변경 및 기초형식(매트⇒파일기초) 변경 등

4. 사업시행기간(예정) : 2007. 7. 2. ~ 2011. 2. 24.

5. 관계도서는 우리 구 건축과(☎453-279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